

전주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8가단282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8. 9. 19

판결 선고 2018. 11. 14

## 주 문

1. 원고에게, (1) 피고 B은 ① <전주시 완산구 D 대 144㎡>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0, 13, 8, 9,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나)부분 17㎡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일부 및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함과 아울러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② 2017. 5. 25.부터 위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B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49,300원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며, (2) 피고 C는 ① <전주시 완산구 D 대 144㎡>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6, 7, 8, 13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(다)부분 4㎡ 지상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을 철거함과 아울러,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, ② 2017. 5. 25.부터 위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 C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11,600원씩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각각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토지(이하 편의상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7.5. 25.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갑 2, 3, 6-1, 6-2, 7-1~7-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축탁결과와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오래 전부터 줄곧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소유의 주택이 주문 제1항에 나오는 (나)부분 17㎡를,피고 C 소유의 주택이 주문제1항에 나오는 (다)부분 4㎡를 각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바램에,피고들이 오래 전부터 줄곧 위 (나),(다)부분을 각각 점유 · 사용하게 된 사실, 위 (나), (다)부분의 임료가 주문 제1항의 해당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위 (나),(다)부분 지상의주택 부분을 각각 철거하고,②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,③ 주문 제1항의해당 부분에 나오는 각각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0. 2. 9.경, 피고 C는 2009. 5. 14.경 위 (나), (다)부분을 각각 점유로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,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. 1. 23.경부터피고들의 위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로 시효취득할 수

없다는 취지로 다룬다.

그러므로 살피건대, 갑 6-1, 6-2, 8, 9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피고들이 1998. 1. 23.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할 무렵 각각의 경계침범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원고 측에게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않을 태도를 나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'외형적 ·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'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, 이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여,피고들이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결국 어느 것이나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## 2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,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.

판사 박관근

별지